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업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업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업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조선업은 하도급 생산구조가 보편화 되어있고, 제조업은 공장 정비·보수·증설의 경우 외주작업이 관행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급의 일반화는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취약한 영세 수급업체로 위험까지 전가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러한 수급업체의 산업재해는 수급 사업주 자신뿐만 아니라 도급 사업주에게도 생산활동 차질, 법적 책임, 기업이미지 훼손 등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에,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높여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본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활동 체계와 절차,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를 확립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6. 6.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백화권**

Contents



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4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4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5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II.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체계

8

1. 도급사업수행 시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요소는? 8
2.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방법은? 9
3.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수행해야 할 안전보건 활동은? 12



III.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활동내용

13

1. 도급사업 계약 시 13
2. 도급사업 수행 시 14
3. 도급사업 평가 시 25
4.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26



IV.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31

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 ㉔ 도급은 당사자(수급인)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임
 - 도급은 고용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 계약의 일종이나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 있어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됨

- ㉕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 이행의무가 있으나,
 -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에 대하여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책임을 묻고 있음

- ㉖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란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수급인 사업주를 포함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수급인 사업주에게 유해·위험정보 사전제공, 위험성 평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위험장소 안전보건 조치, 교육 지원 등 일련의 안전보건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과 법적 책임과도 관련되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도급인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

|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 사전방지

- ㉔ 수급인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도급인에게도 생산활동 차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언론보도로 인한 기업 이미지 훼손 등 다양한 유·무형의 손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㉕ 이러한 손실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

- ㉔ 수급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는 도급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 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는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해소의 사회적 책임 실천

- ㉔ 수급인 사업장은 도급인 사업장에 비하여 위험성이 큰 작업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 사업규모의 영세함으로 안전보건관리 능력이 미흡하고, 작업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음
- ㉕ 수급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지원활동은 원·하도급 간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임

3.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도급인의 사전 안전조치 미흡

- 도급인은 시공 중 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가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나 누락하여 산재위험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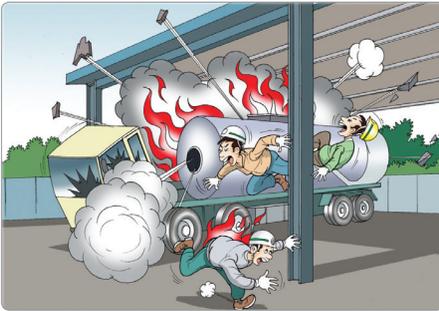
체육관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중 시스템 동바리 붕괴로 11명 부상



PC슬래브 거치작업 중 붕괴로 1명 사망, 1명 부상

| 유해 · 위험정보 사전에 미제공

- 작업과 관련된 유해 · 위험정보를 도급인이 제공하지 않아 수급인의 위험 예측과 사전 대응이 곤란



물류탱크 재검사 공사 중 LPG탱크로리 폭발로 2명 사망



침탄로 내부 철재레일 제거작업 중 폭발로 1명 사망, 2명 부상

| 혼재 작업 시 도급인의 안전관리 소홀

- 소속이 다른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경우 각 업체의 안전조치에 대한 도급인의 조정 및 관리 소홀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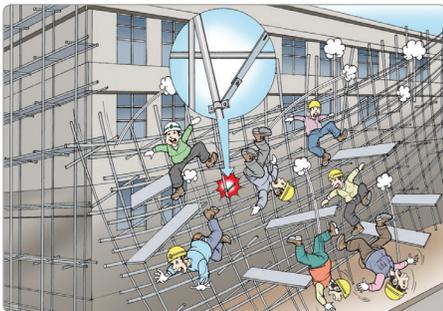
철골 구조물 조립작업 중 철골 구조물이 무너져 2명 사망, 9명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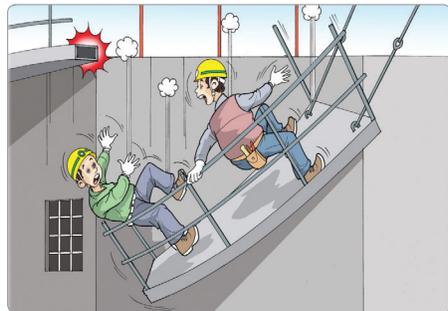
가스배관 가용접 작업 중 용접불티 등에 의한 화재로 8명 사망, 5명 중상, 52명 경상

| 안전이 고려되지 않은 계약 관행

- 원가절감을 우선시 하는 계약관행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가 곤란



공기단축을 위해 벽이음을 미리 해체한 후 비계 해체 작업 중 비계가 무너져 3명 사망, 4명 부상



예정에 없던 추가작업을 서둘러서 하던 중 작업발판이 탈락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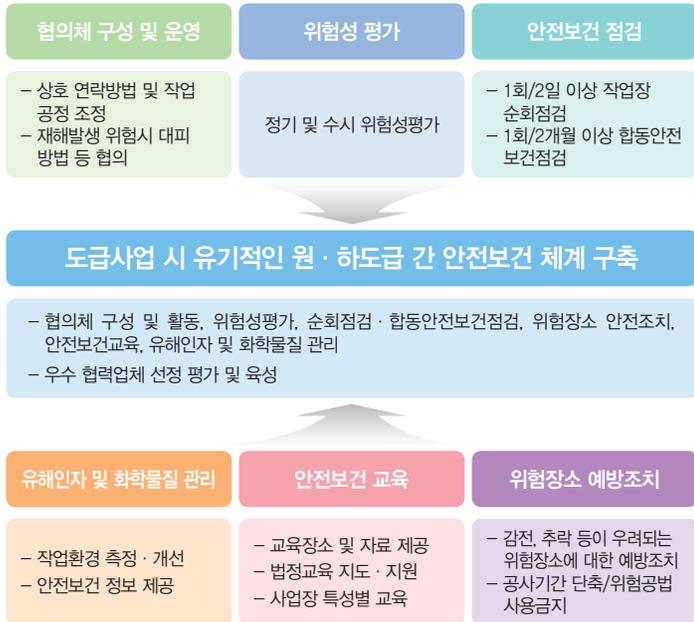
II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체계

1. 도급사업 수행 시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구성요소는?

- ④ 도급사업 수행 시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개선하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위험성평가,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산재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수급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함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2.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위한 방법은?

- ④ 수급인과 함께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이 필요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현장 안전보건 방침 명확화

- 회사의 안전보건방침, 공사 특성,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계획 등에 기초하여 현장 안전보건방침 수립 · 공표
-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 책임 · 권한) 명확화
- 각 수급업체를 포함한 현장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 주지

2 현장 안전보건활동 계획수립

- 현장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하여 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 실행
 - 일정기간(월/주간) 단위공사(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중점관리 위험요소를 관리하도록 담당자, 조치기간 등 세부계획을 수립
 -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의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

3 공사 수행자 모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의 실행

-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각 수급업체 공사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수급업체 해당공사 수행자 참여
- 위험성평가 시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평가
- 현장소장은 유해 · 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
- 공정회의,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한 시공과 안전 간 상시 의사소통

4 적극적 의사소통 추진

- 현장 내 모든 수급업체 소장들이 포함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 매월 1회 이상 공정과 연계된 안전회의 실시
 -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공정 혼재 시는 상시 안전회의 실시
 - 위험성평가의 목표관리 사항(중점관리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과 권한, 조치계획 명확화
 - 현장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혼재 작업이 다수 진행될 경우 안전회의를 수시 개최, 작업 공정 간 위험에 대한 소통 및 위험작업의 시기조정
- 위험성평가를 기본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현장 조치실태를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 점검 시 도출된 위험요인 중 즉시 개선, 다음날 오전까지 등 시점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추적 관리
-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 논의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도급과 수급업체간 합동안전보건 점검을 2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점검 시 도출된 사고 발생위험은 반드시 개선·환류 활동 실시

5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교육대상자, 내용, 실시시기, 강사, 실행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위험성평가 내용과 그 밖에 안전보건관련 사항 교육 실시
- 근로자 정기교육 등 법정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급업체 또는 근로자를 실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주관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집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예산을 해당 현장에 적합하게 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각 수급업체에 적정하게 배분
 -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관리

7 산업재해예방 활동 추진

-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보건협의체회의에서 논의된 중점 위험요인* 과 대책에 따라 수급업체가 적절히 안전관리 활동을 하도록 지원
 - * 추락, 낙하·비래, 붕괴·도괴, 감전, 화재·폭발 예방 등
- 공사에 사용하는 기계·장비·설비·자재 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될 경우 보험, 등록증, 자격증 등 필요서류를 검토하여 사전 안전성 확보
- 근로자의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정기적 건강진단 실시 및 적절한 위생시설 설치
-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획→실시→평가→개선」의 과정을 시공·품질·공정·노무관리 등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체계와 일체가 되어 적기에 실행되도록 관리
- 수급업체의 재해예방활동 능동적 참여 추진
 - 안전보건관련 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자체 선임토록 유도
 - 수급업체가 매 작업일 작업 개시 전에 신규 근로자와 당일작업 근로자 명단 및 반입 기계·장비·설비 등을 보고
 - 수급업체가 작업사항을 파악,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관리
-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처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 비상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및 대책 수립, 현장 구성원에게 훈련 실시

8 수급업체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지속적 개선

- 현장의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이 적절하게 달성되고 실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공사 시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기여한 우수 수급업체를 선정·육성하기 위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
 - 단계별 안전보건활동에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 수급업체의 참여도를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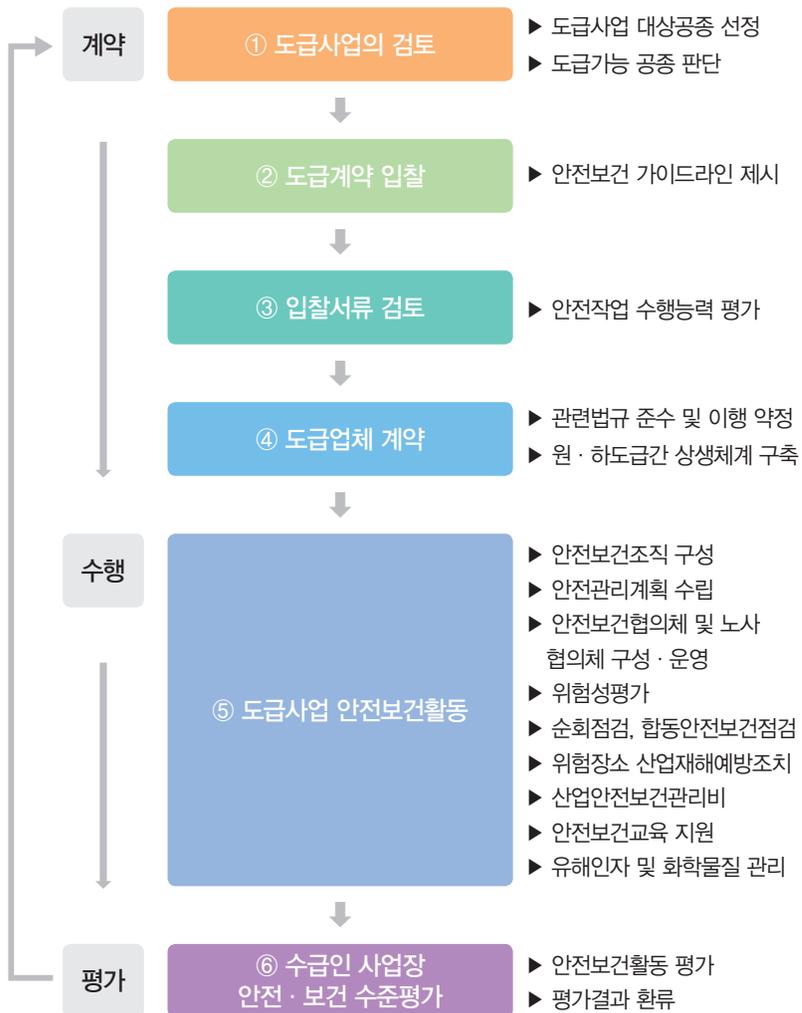
9 수급업체 작업관련 보고 및 허가사항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일체가 되어야 하며,
 - 도급업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급업체의 이행상태* 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 일일 작업일보, 출력일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유해위험 기계기구 반입허가서, 위험성 평가표, 용접작업 등 위험작업허가서, 난방기구 사용 허가서, 야간작업 허가서 등

3. 도급사업 단계별 검토 ·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활동은?

- ㉔ 도급사업 운영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 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함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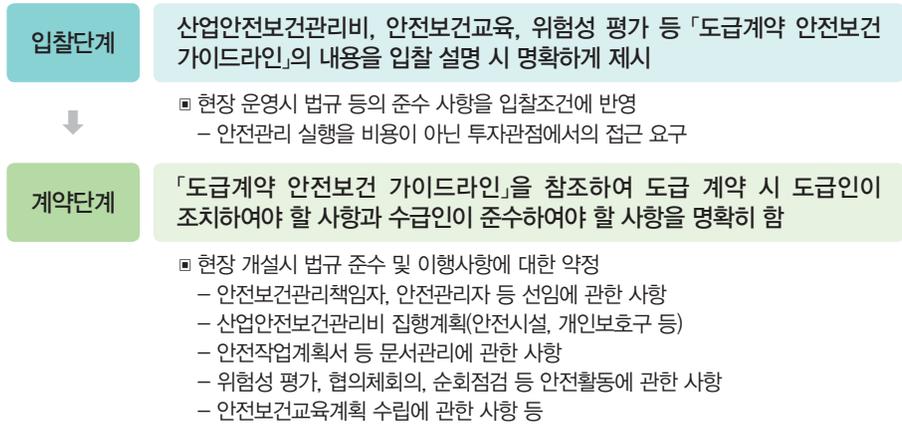
Ⅲ

도급사업 단계별 안전보건활동 내용

1. 도급사업 계약 시

Ⅰ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수급업체 안전수준 확보

- ① 입찰단계에서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 관련 활동상황을 요구
 -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 확보



Tip

- ▶ 안전부문 현장설명 및 입찰기준 내용 예시
 - 배상책임보험 가입조건
 -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기준
 -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위험성평가 실시
 - 개인보호구 및 복장 착용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및 역할
 - 신규채용자 관리 방법
 - 공도구 반입 및 사용조건
 - 장비 및 가설기자재 관리

| 건설현장의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㉔ 건설현장의 도급사업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 시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여 도급인의 지원 활동을 보다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을 배양시켜 근로자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

Tip

- ▶ 관리적 사항
 - 도급업체의 지원 및 수급업체 참여활동
 -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 발대식 개최 및 파트너십 협약체결 계획
- ▶ 재해예방활동
 - 일상적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적정성
 - 수급업체 지원계획의 적정성
 - 수급업체 근로자 사기진작 방안의 적정성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평가계획)
- ▶ 본사 지원사항
 - 본사차원의 지원방안 수립 및 예산지원
 - 본사 안전전담 부서의 현장점검 사항
 - 수급업체의 참여정도 평가 계획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

2. 도급사업 수행 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 구성 지원

- ㉔ 시공단계에서 먼저 도급업체 조직을 기반으로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관리감독자(작업팀장) 등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토록 하고 각 조직별 역할과 책임 부여
 - 안전보건에 관한 임무가 포함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별 서명확인을 통해 문서화
 - 위험성평가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실시반을 구성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

Tip

- ▶ 수급업체 조직별 역할과 책임 부여시 고려할 사항
 - 현장 안전보건활동 운영 지원
 - 위험성평가서 작성, 중점 위험요인 개선조치 및 유지관리
 - 위험성 평가회의 참석
 -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 · 훈련
 -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 수급업체의 시공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㉞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해당공사 착공 전 시공계획을 반영하여 최초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현장 안전보건 목표와 설정기간에 맞추어 구체적 계획을 검토하여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고 관리
 -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목표의 달성상황, 공정상황, 공법의 변경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리

Tip

-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핵심 추진과제
 - 안전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 안전보건 교육계획
 - 최초 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공정, 공종별 재해예방 대책
 - 안전보건활동 계획(월간 안전보건활동 계획 및 1일 안전 Cycle)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개인보호구 지급계획 포함)
 - 기타 안전보건 관리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및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 도급 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협의를 위하여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㉔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 전원을 포함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야 함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격월로 운영 가능
 - 노사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봄

Tip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협의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특례)

- 대상 :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구성
 - 근로자 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1명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사업의 근로자 대표
 - 사용자 위원 :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보건관리자
- 노사협의체는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

|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간의 작업 및 위험요인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 이를 조정·관리하여야 함

- ㉞ “위험성평가”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련의 절차임
- ㉞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능력이 부족할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참여시켜 수급인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서까지 위험성평가를 관리해야 함
- ㉞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수급인 관계없이 위험성평가의 주체를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이 지원하는 위험성평가 및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 사업주, 관리자,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①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②위험성 결정 내용 ③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작업장의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도급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순회점검 실시

- ㉔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도급 사업주가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활동을 지원하고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재발생 위험을 제거함
- ㉔ 수급인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되며, 도급인의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Tip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 의무이나, 반드시 사업주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이유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하여 관리감독자 등에게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점검의 결과 및 조치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가능
 -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도 관리자가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4항]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와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㉔ (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명
 - *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
 - ** 해당 공정 근로자만 해당(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각 수급인 소속 근로자 1명씩 점검에 참여하며, 수급인 근로자는 해당 공정의 합동점검만 참여 가능)
- ㉔ (점검주기) 2개월에 1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 안전·보건 시설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20개)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3.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5. 건설용 리프트를 운행하는 장소
6. 지반을 굴착하거나 발파작업을 하는 장소
7.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8.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9.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장소
 - 가. 선박 내부 나. 특수화학설비 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용기
10. 밀폐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장소
11.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
12. 안전보건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13.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7호에 따른 유기화합물취급 특별 장소
14.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
15.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16. 프레스 또는 전단기(剪斷機)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1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18.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1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20.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㉞ 수급인 근로자는 도급인의 시설물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수급인의 단독적인 재해예방 노력만으로는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으므로,

–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 내라면 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는 위험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

㉞ 아울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의무는 일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또한 안전보건상 조치를 하여야 함

Tip

- ▶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를 현행 “20개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임(‘16년)

Tip

▶ 위험장소 안전조치 예시



소화 장비함 시설 설치



슬립폼 대형개구부 덮개 설치



근로자 안전 이동통로 설치



수상 인명구조함 설치



흙막이 가시설 보강재 설치 및 뒷채움 실시



슬립폼 안전난간대 및 행인데크 안전망 설치

| 위험작업 시 경보운영 및 운영사항 통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운영

- ㉔ 도급인은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보를 운영하고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

-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8항]

도급인은 수급인이 무리하게 공사진행을 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

- ㉔ 도급인은 수급인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아야 하고,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됨

|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 ㉔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 ㉔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㉔ 적용대상

-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㉔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계상
 -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
 -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㉔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 원)

공사종류 \ 대 상 액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Tip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위반시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건당 -0.5점, 최대 -1점)

|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31조의2]

- 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에게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업체가 법적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히 알려주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토록 함 (4시간)
- 정기교육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이상
 - 건설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 지원 예시

- 수급업체가 동참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
 - 지원내용 :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사(공사팀장, 안전관리자)와 수급사(관리감독자, 작업책임자)가 공동으로 실시

Tip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신규채용시 교육을 면제받게 되며,
 - 교육비용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함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및 제42조]

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비치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 취급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임
 - ※ 건설현장 취급 화학물질 예시 : 시멘트, 유기용제, 페인트, 방수제, 접착제, 용접봉 등
- 각 주체별 조치사항
 - ▣ (제조·수입자)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안전·보건상 주의사항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 (사업주)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도급인 및 수급인은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갖춰두어야 함
 - ▣ (교육) 화학물질을 취급·사용하는 근로자를 교육하여야 함
 - ※ 교육내용 :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작업요령, 보호구 착용,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 등

㉕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어느정도 노출되는지를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유해인자 : 터널작업 분진·소음
- 측정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최초실시, 이후 6개월에 1회이상 실시
 - ※ 측정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개선 등 적절한 조치 이행

3. 도급사업 평가 시

|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 수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평가를 통해 수준향상 유도

- ㉞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수준 및 재해발생 수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업체별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㉞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포상 또는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육성하는 일은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
- ㉞ 평가를 통해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수급사업장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 현장 평가의 최종 책임자는 현장소장이지만 평가의 공정 및 적정성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공사담당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반영
 - ※ 평가사항, 평가방법, 평가시기, 평가 후의 보고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은 본사에서 절차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일관성이 있음

Tip

▶ 수급업체 안전부문 평가 예시

- 평가 대상 : 외주 및 안전시설 공사업체의 안전관리 능력평가
- 평가 종류 : 안전활동 평가, 재해발생 평가
- 시기 : 본사 또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함(년 2회 이상)
- 평가부서 : 1차 공사현장, 2차 본사 안전팀
- 평가항목 : 시스템, 현장 안전활동 운영실태(주락, 협착 등), 재해(산재) 발생 여부
- 등급단계 : 우수 > 양호 > 보통 > 불량 등
 - ※ 평가 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등급 부여, 차기 입찰점수에 반영하여 우수 수급업체 인센티브 부여

4.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사례 1 안전우수 협력업체 인센티브 부여

| 주요내용 |

안전관련 지원

- 안전우수 협력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인센티브 부여
 - 매년 안전·보건분야 우수 수급업체를 선정하여 수의계약 인센티브 부여
 - ▣ 년 2개사만 선정함으로써 실질적 안전관리 강화 유도
 - 우수 협력업체 평가 시 상시 예방활동 반영(100점 만점 중 10점 가점 부여)
 - ▣ 전문건설업 KOSHA 18001 인증 시 : +5점 가점
 - ▣ 수급업체 본사 안전·보건조직 확보 : +5점 가점
- 안전혁신학교 운영
 - 협력업체 안전혁신 마인드 강화를 위한 체험교육(1박2일, 무료)

기술지원 및 기술보호

- 신기술 공동개발
- 공동 특허 / 디자인 출원 지원

경영지원

- 원자재 제공(사급제도)
 - 도급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협력업체의 주요품목을 구매 대행 후 지급(가격변동 위험 저감)
- 해외 동반진출 지원(해외 마케팅 지원)
 - 협력업체에 대해 준비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제도 운영(해외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공유)

사례 2 안전카페를 활용한 실시간 현장 안전관리

| 주요내용 |

- 스마트폰(Mobile)을 이용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 공유
 - 앗자사고 발굴·공유, 안전보건관련 질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실시간 정보 교류

예시1)



Near Miss 게시판에 공지



안전관리자 및 협력사 통보



해당업체에서 조치 및 보고

예시2)



안전 관련 질문 등록



안전관리자가 답변 등록



질의자에게 자동 통보

사례 3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활동

| 주요내용 |

- 단계별 안전활동 참여 유도
 (1단계) 위험성평가 활동 지원 → (2단계) Near Miss(앗차사고) 발굴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수급근로자 참여 유도 → (3단계) 복지 및 감성 지원 등을 통한 자율참여 유도

예시



Near Miss 발굴자 포상



안전스트레칭 기구 배치



안전의식 향상 ○,× 퀴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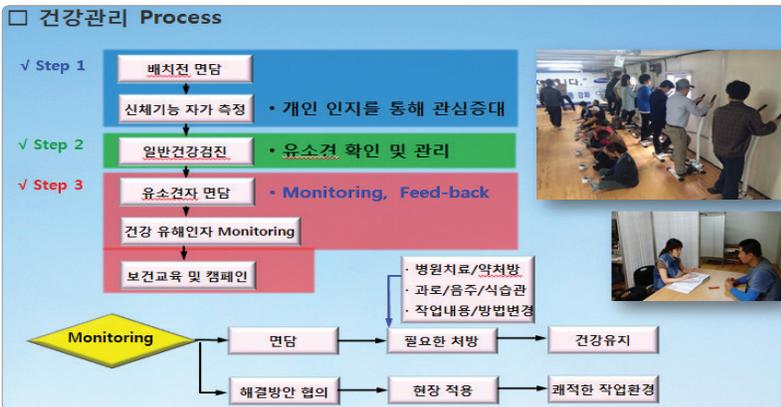
근로복지 시설 및 활동

사례 4 근로자 건강증진 관리

| 주요내용 |

- 체계적인 일용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 현장 내 건강관리실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유해인자 모니터링 실시
 -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분위기 향상

예시



□ 관리 방안

- 작업환경 별 관리 Process 와 유해위험인자 申 리스크가 큰 항목 우선관리대상 선정 및 집중 관리를 통한 개선 실현
-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유도 (Near Miss 자을 신고제)
-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작업환경 개선이 눈으로 확인 되도록 하여 상호 신뢰감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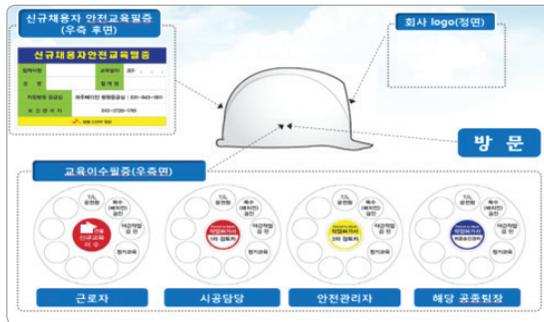


사례 5 보호장구류 관리

| 주요내용 |

- 효율적 근로자 관리를 위한 안전모 스티커 제공
 - 공종별 안전모 색상 구분지급, 교육이수 스티커 발급
- 줄걸이 점검 및 수공구 관리 체계 확립

예시



안전모 지급 및 교육이수 확인 스티커



줄걸이 및 수공구 점검 스티커

IV

도급계약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1. 목적

-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공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수급인 사업장은 사업규모의 영세성, 도급인 사업장 내에 작업장소가 있는 등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장 간 상호협력과 도급인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 이 가이드라인은 이를 위해서 도급계약 시 도급인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과 수급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 범위

- 이 가이드라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한 사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도급인”이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업체를 말한다.
- “수급인”이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도급 계약”이란 수급인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업무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4. 도급 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① 도급인은 법 제30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를 수급인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해 적정하게 지급,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비는 도급인이 직접 집행하거나, 수급인에게 일정금액을 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안전관리비를 수급인에게 배정할 경우 공사특성, 난이도,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배정 요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배정된 안전관리비에 대해 실행예산서를 편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안전관리비의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추가 배정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교육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

- ①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②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③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5) 안전보건 점검

- ① 도급인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② 도급인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 ①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하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작업환경

- ①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②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 조치 이행

- 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사내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업

펴낸 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박화진
산업안전과장 황종철
사무관 류관훈
근로감독관 오현석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부장 박상복
건설안전차장 채종범

발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발행일 2016년 6월

전화 (044)202-7729

인쇄 대양 (052)248-2181

* 비매품